# 산학협력단 취업규칙

제정: 2020.12.01

##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대원대학교산학협력단(이하 "산학협력단"이라 한다)에서 근로하는 소속 직원의 근무조건을 규정함으로써 본 산학협력단의 지속적인 발전과 직원의 복리증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 이 규칙은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.

- ② 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법령, 계약 및 그 밖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제3조(직원의 정의) 이 규칙에서 "직원"이라 함은 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에 임용된 자를 말한다.
- 제4조(준용) ① 이 규칙과 산학협력단의 제반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관계 법령과 기타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.
  - ② 이 규칙과 제반 규정은 노동관계 법률 개정 시 그 개정 내용 및 취지에 따르기로 한다.

# 제 2 장 임 용

제5조(일반원칙) 산학협력단은 소정의 자격을 구비하고 있는 자 중에서 【대원대학교 직원 인사규정】 을 준용하여 임용한다.

제6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.

- 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- 2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
- 3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4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
- 5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6. 기타 본 산학협력단 직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- 제7조(근로계약) ① 직원으로 임용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, 날인하여 본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 단, 정년이 보장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
  - ② 본 산학협력단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, 근로시간, 휴일, 휴가, 기타 근무조건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.

- 제8조(근로계약기간) ① 일반직원의 정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요양보호사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으며, 그 기간은 따로 정한다. 일반직원은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는 8월말에,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.
  - ② 계약직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은 계약으로 정한 기간으로 하되,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,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.
  - ③ 근로계약기간 중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계약 당사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#### 제 3 장 복 무

- 제9조(복무의무) 산학협력단 직원은 【대원대학교 직원 복무규정】에 의한 복무지침, 법규준수의 의무, 비밀 준수의 의무, 청렴의 의무, 보고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제10조(근로시간 등)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. 단, 필요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은 공휴일 근무와 방학기간 중 단축근무를 명할 수 있다.
  - ② 점심(휴게)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.
  - ③ 직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- 제11조(시간외 근무) ① 직원은 필요에 따라 공휴일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외에도 근무할 수 있다.
  - ② 연장, 야간 및 휴일근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.
- 제12조(근무상황의 관리) 직원은 출근 즉시 상황부에 기록하거나 또는 소속 부서장에게 출근 보고로 상황부에 갈음할 수 있다.
- 제13조(출근) 직원은 업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정상근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.
- 제14조(결근) 직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출근을 하지 못할 때에는 산학협력단장에게 당일 지체 없이 전화 또는 서면으로 결근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5조(출장) ① 직원이 직무로 출장하려 할 때에는 출장명령에 의하여 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② 출장한 직원이 지정한 시간 내에 용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 및 기타 방법으로 그 사유를 보고하여 상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.
- 제16조(당직근무) ① 산학협력단장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, 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

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또는 기타의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,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,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비상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② 전항 이외의 당직근무 등에 관하여는 【대원대학교 당직규정】을 준용한다.

제17조(휴일) 산학협력단은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정한다.

- 1. 대원대학교 개교기념일(5월 20일)
- 2. 『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』에 따른 공휴일
- 3. 근로자의 날(5월 1일)
- 4.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

제18조(휴가의 종류) 직원의 휴가는 연가, 병가, 공가, 특별휴가, 생리휴가로 구분한다.

- 제19조(연차유급휴가)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. 다만, 1년 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 를 준다.
  -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.
  - ③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,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.
  - ④ 위 연차유급휴가 조항에 대해 법정 기한과 절차에 따라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.
- 제20조(연차휴가의 사용) ① 직원의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.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②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. 사용 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.
- 제21조(병가)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년 2개월의 범위 내 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을 요할 때에는 그 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수 있다.
  - 1.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업무 불능일 때
  - 2.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교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
  - ② 병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22조(공가)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한다.

- 1. 병역의무로 인하여 비상소집 된 때
- 2. 공무로 인하여 법원, 검찰,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
- 3.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할 때
- 4. 화재, 수재 및 기타 재변을 당하였을 때
- 5. 교통 차단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

제23조(특별휴가)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에 따라

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. 다만, 휴가의 목적지가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 수를 가산할 수 있다.

1. 결혼 시 : 본인(5일), 자녀(1일)

2. 출산 시 : 배우자(10일)

3. 사망 시 :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(5일)

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(3일)

자녀와 그자녀의 배우자(3일)

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(1일)

4. 회갑 또는 칠순 : 본인 및 배우자(5일)

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(1일)

5. 입양 : 본인(20일)

제24조(생리휴가) 여성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 휴가를 주어야 한다.

제25조(신분보장·휴직기간·사유) 직원의 신분보장, 휴직기간, 사유 등은 【대원대학교 직원인사규정】 을 준용한다.

제26조(휴직중의 신분) ① 휴직중의 직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다.

- ②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.
- ③ 휴직이 만료된 직원은 당연히 복직된다.

제27조(휴직기간의 처우) 휴직 중 직원의 처우는 [학교법인 민송학원] 정관의 휴직 교원의 처우에 의한다.

제28조(복직 및 해직)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전에 복직 신청을 하여야 하며, 복직 및 휴직에 관한 사항 【학교법인 민송학원】 정관의 휴직 교원의 처우에 의한다.

- 제29조(육아휴직) ①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남녀 직원이 그 영유 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. 단,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- ②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
  - ③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으며 특히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하지 않는다.
  - ④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 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.

제29조의2(가족돌봄휴직 등) ① 직원이 부모, 배우자,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, 사고,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 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-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1.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조정
- 2. 연장근로의 제한
- 3. 근로시간의 단축.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
- ③ 직원이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 또는 휴가신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.
- 제30조(임산부의 보호) ①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 가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 부여한다.
  - ②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 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.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.
  - ③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 령에 따라 휴가를 부여한다.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.
  - ④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킬 수 있다.
- 제31조(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) ① 임신한 여성 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다른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.
- 제32조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 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남녀 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 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 상적인 학교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 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.
  - ③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.
  -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
- 제32조의2(육아시간)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10조의 휴게 시간 외에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.

#### 제 4 장 인 사

- 제33조(인사위원회) ①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에서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  - ②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.
- 제34조(인사발령의 효력) ① 임용은 발령으로서 그 효력을 발생한다. 다만 신규 임용자는 신원조

- 회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.
- ② 직원은 인사발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- ③ 인사발령은 취소할 수 없다. 다만, 직무상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의 제출로 임용된 때에는 그 발령을 취소하거나 해당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.
- 제35조(정원의 관리) 직원의 정원은 산학협력단의 신규사업 선정에 따른 직원임용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학협력단장의 명에 따라 관리한다.

제36조(승진시기 및 대상) 직원의 승진은 사업별로 필요에 따라 시행한다.

제37조(승진의 제한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임용을 제한한다.

- 1. 징계처분 및 휴직 중에 있는 자
- 2.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
- 3. 기타 승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자

# 제 5 장 보 수

제38조(보수) ① 직원에 대한 보수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구분한다.

- ② 계약직원의 보수는 사업예산, 업무특성, 난이도, 자격조건, 근무연한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되, 각종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.
- ③ 산학협력단은 보수 책정 시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.

제39조(기본급의 결정) 직원의 기본급은 사업별 승인예산 등에 따라 결정한다.

제40조(제수당의 지급) 사업별 승인예산 등에 따라 결정된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.

- 제41조(시간 외, 휴일 및 야간근로 수당)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, 야간(오후10시~오전6시)근로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42조(보수의 지급방법) ① 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월의 17일에 직원이 지정한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.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
  - ② 신규채용, 퇴직 등과 같이 신분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보수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제43조(퇴직금) 직원의 퇴직금 지급은 관계법령에 따른다.

### 제 6 장 퇴직·해고 등

제44조(퇴직 및 퇴직일)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.

- 1.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
- 2. 사망하였을 경우
- 3.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
- 4. 근로계약기간이 만료 된 경우
- 5. 해고가 결정된 경우
- ②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직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날
- 2. 직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날. 단,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범위 내에서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.
- 3. 사망한 날
- 4. 정년에 도달한 날
- 5.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
- 6. 해고가 결정·통보된 경우 해고일

제45조(해고) 직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.

- 1.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(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)
- 2.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 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
- 3.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
- 4.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
제46조(해고의 제한)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, 여직원의 산전·후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에는 해고할 수 없다. 다만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.

② 경영상의 악화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다.

제47조(해고의 통지) ①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.

-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,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1. 사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
- 2. 천재·사변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
- 3. 사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

# 제 7 장 표창 및 징계

제48조(표창대상) ① 표창대상은 산학협력단 직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- 1. 장기근속자
- 2. 헌신적인 봉사로서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
- 3. 근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극히 탁월한 자
- ② 장기근속은 10년 이상으로 하되 10년을 단위로 하여 계속 표창할 수 있다.
- ③ 표창 대상자 및 방법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.

제49조(징계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직원에 대하여는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.

- 1.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
- 2.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힌 자
- 3. 산학협력단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
- 4. 산학협력단의 영업을 방해하는 언행을 자
- 5. 산학협력단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
- 6. 정당한 이유 없이 산학협력단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자
- 7.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
- 8. 산학협력단이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
- 9.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는 자
- 10. 다른 직원 등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
- 11. 기타 법령 위반 등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

제50조(징계종류)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- 1. 견책 :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.
- 2. 감봉(감급):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, 총액은 월 급여 총액의 10분의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.
- 3. 정직 :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,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4. 해고 :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.
- 제51조(징계의 요구) ① 직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산학협력단장이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.
  - ②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징계의결 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.
- 제52조(징계결과 통보) 징계결과 통보는 해당 직원에게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의해 서면으로 통보한다.
- 제53조(재심절차) ①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.

#### 제 8 장 교육 및 성희롱의 예방

- 제54조(직무교육) ① 직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직원은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의한 직무교육은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.
  - ③ 교육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.
- 제55조(성희롱의 예방) ①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한다.
  - ②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직원에게는 지체 없이 징계,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### 제 9 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

- 제56조(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)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임원, 직원이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 등에게 신체적,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.
  -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57조(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)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
  - 2. 지속·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
  - 3.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
  - 4.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
  - 5.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
  - 6.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,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 결정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
  - 7.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
  - 8.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
  - 9.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

- 제58조(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)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.
  -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  -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(이하 "피해근로자등"이라 한다)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,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.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, 배치전환,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-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,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  -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 제 10 장 안전과 보건

- 제59조(안전보건 교육)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을 위해 각종 교육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모든 직원은 이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.
- 제60조(건강진단) ① 직원의 건강보호 및 유지를 위하여 【국민건강보험법】에 따라 매년1회 건강 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단 사무직은 매2년에 1회 실시한다.
  - ② 직원은 직장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.
- 제61조(질병자의 근무금지 제한) ① 감염병, 정신병 또는 근무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 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 의사의진단에 따라 근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근무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직원이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복귀하게한다.
- 제62조(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) 직원에게 그 직무에 따라 안전상 필요한 작업용구 및 작업복 등을 대여 또는 지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직원은 근무 중 반드시 이를 착용해야 한다.
- 제63조(산업안전보건법 준수)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술직 직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대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·증진 시킨다.
  - ②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의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

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# 제 11 장 재 해 보 상

- 제64조(재해보상)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 하였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.
  -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 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.

# 제 12 장 보 칙

제65조(취업규칙의 변경) 이 규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직원의 과반수 의견을 청취하여 야 한다. 다만, 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